

# 제조물책임법 시행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이냐 고의성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품을 만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손해배상 제도와 다른 것은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 소비자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빈발하는 자동차 급발진사고의 경우 지금은 소비자가 차량 결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배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PL법이 시행되면 입증 책임이 자동차 회사로 넘어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은 막대한 배상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심한 경우 기업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거액 손해보험에 가입, 소송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품질 개선 노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제조물책임법을

운이 나빠 걸리는 소송을 피하기만 하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이 터지고 난 후 막는 일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제품개발 기획단계부터 사후처리까지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제조물책임법이 관련되어 있다. 단지 소송이 걸렸을 때 보험으로 배상금 부담만 덜면 된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본격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몇 푼의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된다. 단지 얼마의 배상금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후대응도 필요하다. 단지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하고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이미지 상승 등의 이유로 안전한 제품개발과 완벽한 사후관리는 어느 홍보수단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것은 곧 PL이 기업에게 위기이자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 제조물 책임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 사례

1.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에 청산가리가 투입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존슨앤존슨측은 이 사실을 즉각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고 10만 달러의 범인 현상금을 걸었다. 또한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며 시중에 나도는 타이레놀을 전량 수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존슨앤존슨은 안전 제일주의 기업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줬다.

2. 2000년 6월 안약을 만드는 일본의 산텐제약에 2000만엔을 송금하지 않으면 벤젠을 넣은 안약을 시중에 배포하겠다는 협박장이 날아들었다. 산텐제약은 이 사실을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알렸다. 이와 함께 신속히 전국의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토록 해 250만개의 안약이 1주일만에 회사로 되돌아왔다. 결국 10일만에 범인이 체포되었고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결과를 낳았다.

## 중소기업 PL법 시행 무방비

현재 대기업의 경우 배상책임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러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는 기획단계부터 기존의 제품의 하자발생 요건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신제품시판에도 신중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PL법 대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PL 전문인력 양성이나 전담조직 구성 등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종업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의 자체 PL법 대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L법과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 역시 미미하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보험 지원을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의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명서를 반드시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덜 수 있는 근거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는 일반 PL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단체 PL보험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원재료, 부품, 완제품 제조자 및 수입업자 등이다. 특히 심야전기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다.

또한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PL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사의 PL법 관련 보험도 각종 부가 서비스 및 정보가 많아 참고해보아야 한다.

